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정원 1명(6급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직자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1명(6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국세청”을 “1명(6급 1명)은 국세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04”를 “401”로 하고, 일반직 계 “403”을 “4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8”을 “37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0”을 “188”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8”을 “156”으로 한다.

별표 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③ (생 략)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금융위 원회, 1명(6급 1명)은 국세청, 1 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 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 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 야 한다.	④ ----- ----- 1명(6급 1명)은 국세청 ----- ----- ----- ----- ----- ----- ----- ----- -----.
제30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30조(한시정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 처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4</u>	<u>401</u>	-3
•	•	•	
•	•	•	
일반직 계	<u>403</u>	<u>400</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8</u>	<u>375</u>	-3
•	•	•	
•	•	•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90</u>	<u>188</u>	-2
·	·	·	
·	·	·	
일반직 계	<u>188</u>	<u>18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8</u>	<u>156</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